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관 업무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관 지정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의 대표성, 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으로 균형 있는 지역 평생학습기반 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둘째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셋째 현재 지역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서울시교육청에 두고 평생학습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지정 평생학습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전체 평생학습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의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